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해설(II)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서기관 | 최 두 선

지난 호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중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부문의 일부 개정내용까지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도 이어서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의 개정내용부터 설명해 나가기로 하겠다.

16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제25조제1항제5호)

종 전	개 정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판매·공역 계약(다만, 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이하)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5. ----- -----2억원----- -----1억원----- ----- -----8천만원-----공사,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판매·공역계약(다만, 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이하)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지난 '98년 이후 한번도 변동되지 않고 금액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6년부터는 전자전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변경되어 발주자의 자율판단에 의한 수의계약의 폭이 대폭 감소되었다.

금번 상향조정된 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지방소재 중소기업체의 영업사정 등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서 상향조정으로 중소기업체 보호·육성, paper company 난립방지, 불법하도급예방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예방이 기대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수의계약의 제외(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종 전	개 정
6.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6. 〈삭 제〉

본 조항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2007. 1. 1부터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어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동 조문의 효력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발생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특별법등으로 설립된 단체등과 수의계약 대상 명확화(제25조제2항)

종 전	개 정
〈신 설〉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 바목 및 사목, 동항 제8호 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

동 개정 내용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 법인, 국가유공자 단체 등 국가적 지원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들 법인이 직접물건을 생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에게 전매하거나 하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시 자격요건, 물건의 직접생산 유

무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수의계약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위하여 동 조문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확인대상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호 바목 : 국가유공자 자활 집단촌 복지공장에서 직접생산
- 8호 다목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법률에서 정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물건의 매각 및 임대계약
- 8호 라목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이 직접생산 하는 물품·용역
- 8호 마목 : 국가유공자 단체중 상이를 입은단체가 생산하는 물품·용역
- 8호 바목 :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가 생산하는 물품·용역
- 8호 사목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19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확대(제26조제1항)

종 전	개 정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u>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u>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 ----- <u>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경쟁입찰 성립이 어렵거나 계속 유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동 조문의 개정을 통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도 전자견적에 의한 견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견적에 의하는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자가 없거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수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대상자 범위 조정(제30조제1항)

종 전	개 정
<p>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호, 제4호, 제6호 가목 내지 라목, 제7호다목·마목, 제8호다목·사목·아목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p>	<p>제30조(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등) ①----- ----- ----- ---제2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다만, 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 등의 경우에는-----.</p>

동 조항은 1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계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계약체결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기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1인 견적으로 간소화된 내용이다. 금액에 의한 경우 종전 추정가격이 1천만원(용역·물품 5백만원)미만공사에 한하여 1인견적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물품, 용역계약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소액수의계약은 계약의 신속성이 확대되고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계약의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수의계약의 내역을 1년이상 계약상대자 현황,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소액수의계약의 대상이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관련 설계, 감리 안전진단 용역 등을 말하며 이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나 감리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금액에 관계없이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경쟁이 불가한 경우(25조 1항1호)
-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임차, 자재구입, 의약품구입, 방역소독, 시설물붕괴우려 등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내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 중소기업 특별지원구역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생산 하는 물품(6호 바목)
-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으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재를 재해를 발생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중 상이를 입은 단체, 장애인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
-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가격의 결정은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격의 협상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21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제출 규정 보완(제30조제2항)

종 전	개 정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야 한다.</p>

동 조문은 소액 수의계약시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 견적을 제출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기로 2인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표현을 명확하게 한 것이며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한 사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 ㉓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㉔ 버스임차(숙식 포함 가능)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㉕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㉖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㉗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1인 견적제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인쇄등)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인이상 추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㉙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준용범위를 시행령 제13조 전체가 아니라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한정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24 입찰공고 정정근거 마련(제33조제2항)

종 전	개 정
제33조(입찰공고) 〈신 설〉	제33조(입찰공고)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공고 내용에 관한 법령의 오기(誤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동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입찰공고문을 법령과 다르게 공고하거나 잘못 공고한 경우에 정정공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찰공고문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정정공고 근거를 마련하여 발주자의 오류로 인한 계약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찰공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정공고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고 일로부터 공고기간을 추가(5일이상) 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

- 추정가격이 10억원인 공사를 7일간 공고하여 5일이 지난 후 6일차에 공고내용에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정정하는 경우 남은 2일 (6일차 포함)에 5일을 추가 하여 (총 7일) 연장 공고

25 입찰공고기간 조정(제35조)

종 전	개 정
<p>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u>10일</u>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u>10일</u>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u>20일</u>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u>40일</u> <p><신 설></p> <p>④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7일----- -----.</p> <p>②-----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p> <p>③-----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일 2.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p>④ (현행과 같음)</p> <p>⑤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p>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동 조문은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시공기간을 단축하고 협상에 의한 공고기간을 확대하여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입찰공고기간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나 아래와 같은 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특성상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 국가계약법은 50억 이상은 40일, 지방은 50억 이상 222억원 미만은 30일, 222억 이상은 40일

26 입찰공고 내용 보완(제36조)

종 전	개 정
<p>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3. (생략) <u><신설></u></p> <p>4. (생략) <u><신설></u></p> <p>5. (생략)</p> <p>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p> <p>7.~16. (생략)</p>	<p>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p> <p>1.~3. (현행과 같음)</p> <p>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p> <p>4. (현행과 같음) <u>4의2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u></p> <p>5. (현행과 같음)</p> <p>6. -----<u>(제42조제1항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u>----- -----</p> <p>7.~16. (현행과 같음)</p>

동 조문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입찰자가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참가의무여부를 입찰공고에 분명히 명시토록 하여 입찰시 분쟁소지를 예방한 것이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장설명 불참시 입찰무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효규정이 아니라 입찰참여 배제규정을 두어 협상계약시 제안설명 불참으로 인한 시공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있다.

27 개찰 및 낙찰선언 관련규정 보완(제40조제2항)

종 전	개 정
<p>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p>	<p>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한다.</p>

동 조문은 종전 가격입찰만 실시하던 낙찰자 과정을 적격심사 또는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의 입찰 금액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문구를 정리 한 것이다

동조문에서 낙찰선언이란 현장입찰에서는 현장에서 입찰 담당자가 낙찰자를 발표하는 선언 방식이나 전자입찰이 대부분인 현재에는 낙찰자를 문서로 통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8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조문정리(제42조제1항)

종 전	개 정
<p>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단서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p> <p>〈신 설〉</p> <p>②~④ (생략)</p>	<p>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본문에 규정된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p>②~④ (현행과 같음)</p>

동 조문은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즉, 낙찰자 결정방법이 적격심사제도, 물품최저가입찰, 2단계 경쟁입찰제도, 최저가입찰제도 등 낙찰자 결정방법이 동 조항에 혼재되어 있어 적격심사제도 이외

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각각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법중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소액(1.9억원 미만) 물품입찰시 최저가 입찰과 적격 심사제도를 병행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소액물품(1.9억원 미만)의 경쟁입찰 방법은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였으나, 소액물품의 입찰은 대부분 중소기업자가 참여하는 부문으로 의무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경우 덤핑입찰 성행으로 중소기업체의 경영부실 초래 위험 및 계약이행 부실화를 초래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저가와 적격심사중 어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덤핑입찰 또는 업체의 부실발생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예시 :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경영상태 등 이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

한편,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가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최저가 입찰시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조문정리(제42조의1)

종 전	개 정
<p>〈신 설〉</p>	<p>제42조의1(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4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동조문은 최저가낙찰제에 있어 종전에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법제화한 사유는 심사위원들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당 업자의 제재등 위원회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였다.

30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개선(제43조)

종 전	개 정
<p>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①----- ----- 물품·용역계약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계약----- -----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그 지방자치단체-----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p> <p>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p> <p>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p> <p>⑦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 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 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p>

<p><신 설></p>	<p>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신 설></p>	<p>⑨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신 설></p>	<p>⑩ 위원회는 각 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서 작성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p>
<p><신 설></p>	<p>⑫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p>

동 조문은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도입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시범사업(30개)공사와 계약이행의 전문성·창의성이 요구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시공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도입하여 사업의 최고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사의 협상계약방식에 의한 입찰시 설계 또는 디자인등 용역업자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필요한 경우 용역·물품의 경우에도 일부 SI사업 등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고, 이행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함을 이유로 제안설명회 참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현장설명을 의무화 할 경우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다

한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세부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의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였다.

31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근거조항 정리(제45조제1항)

종 전	개 정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 -----가격에 따라 품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또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품질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이른바 종합낙찰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령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세부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사부에서 자치단체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32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제25조제1항제5호)

종 전	개 정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42조제1항1호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4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p>② (생략) <u>③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동일단가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u></p>	<p>5. 제42조제1항 제 3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p>
---	---

동 조문은 경쟁입찰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다수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낙찰자를 선별하는 방법을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를 명문화 한 것이다.

또한, 절감사유 등 최저가 입찰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동가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명문화 하여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33 계약의 이행보증제도 개선(제51조)

종 전	개 정
<p>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p> <p>1. 2. (생략)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p> <p>〈신 설〉</p>	<p>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 ----- ----- -----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p> <p>1. 2. (현행과 같음)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만</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	---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는 계약보증금이외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바,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하여 우선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 것이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저가입찰 방지를 위하여 저가입찰시 공사이행보증금액을 상향 조정(40% ⇨ 50%)하였으며, 연대보증제도 단계적 폐지에 맞추어 연대보증인 입보를 물적 보증으로 변경하는 것을 1회에 한하여 허용토록 하였다.

34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보증금 반환규정 보완(제51조제6항)

종 전	개 정
<p>⑥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u>100분의 10</u>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에 따라 ----- -----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2호및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서 정한 율을 의미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p>

동 조항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보증금 반환금액을 3가지 보증형태에 맞도록 조정한 내용이다.

이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반환은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토록 한 취지이다.

동 조문은 건설기술관리법 이외에도 전력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전력기술 관리법 제12조 제1항

-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발주해야 한다. 단, 전압 600볼트미만 전력시설물 보수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7 수해복구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제60조제1항)

종 전	개 정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8. (생략) <신 설> 9.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①----- ----- ----- ----- ----- 1.~8. (현행과 같음)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10. 현행 제 9호와 같음

동 조문은 수해복구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하천, 도로, 상하수도공사 등에도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 감독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며, 이는 수해복구공사 자체가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많아 복구과정에 관련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 것이다.

38 대금지급기한 단축(제67조제1항)

종 전	개 정
제67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 ----- -----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7일----- -----

동 조문은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집행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금지급 기한을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 것이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7일 기간 계산시 공휴일 및 관계법령에 따른 발주기관 휴무일은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상대 사업자에게도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39 물가변동제도 개선(제73조제6항)

종 전	개 정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⑤ (생략) <신 설>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동 조문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에는 품목전체가 평균 3%이상 증가 해야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변경하였으나 특정자재의 가격 급등락시(15%이상)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원도급업체 특히, 특정자재를 납품 설치하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물가변동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특정품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인상 등을 허용한 것이다.

40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가 제출된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개선(안 제74조)

종 전	개 정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략) <신설>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 제1호 및 제42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동 조문은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가 제출된 최저가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동 절감 부분에 대한 설계서상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불가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토록 함으로써 최저가 입찰에서 입찰자가 제안한 설계서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증액은 할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